

폭력의 교육 이젠 그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 자료집

일시 2012.10.04. AM10:30~11: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후원 유은혜 의원실

자료집 순서

2p 자료집 순서

3p 행사 순서

4~5p <2012년 대선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6~ 14p <청소년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결과

15~16p 청소년단체 성명서

17~22p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취지와 구성, 활동계획

23~24p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25~30p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정책(입법) 방향

31p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행사 순서

1부. 청소년단체 공동기자회견 (오전 10:30~11:00)

진행: 타이루

- ① “조금더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대선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② “청소년이 대선후보에게 교육·청소년 정책을 묻는다!”
청소년 대선후보 공개질의 결과 발표
희망의 우리학교

- ③ 성명서 낭독
청소년활동가 2인

2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 (오전 11:00~11:30)

진행: 배경내

- ① 취지와 활동계획 소개
변춘희 (어린이책시민연대)

- ②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발표
최훈민 (희망의우리학교)
+ 참가자 일동

- ③ 입법정책방향 발표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④ 다짐의 말

- ⑤ 출범선언문
운동본부 참여단체 3인

1부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조금 더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2012년 대선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기간

- 1차 : 2012년 6월 9일 ~ 6월 15일

- 2차 : 2012년 7월 18일 ~ 8월 6일

대상 : 전국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방법 : 구글독스 설문조사 폼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복수응답

참여자 수 : 총 18,946명

<조사 결과>

- ① 학생인권 및 학생 참여 보장 : 두발자유, 체벌금지, 참여할 권리, 수업 선택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학생회, 동아리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장 : 17507표
- ② 그린마일리지제도(상벌점제) 폐지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교육 방법 적용 : 9264표
- ③ 교원평가제 폐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의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보완,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 : 7357표
- ④ 전국적 고교평준화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 :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을 폐지. 성적에 따라 서열화된 학교를 평준화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바꾸어 경쟁교육을 완화 : 8292표
- ⑤ 일제고사 폐지 : 지역 간, 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 : 11210표
- ⑥ 입학사정관제 폐지 : 입학사정관제 폐지로 대학에 가기 위해 학생들이 관리해야 할 스펙에 대한 부담을 줄임 : 9985표
- ⑦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대학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성적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되지 않고 경쟁이 완화되도록 대학 입시 체제 개편 : 10748표

⑧ 교육복지 확대 : 무상급식 시행,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8875표

⑨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문화공간 증설. 자립지원 및 교육에 대한 지원 : 7881표

⑩ 수업시수 축소 및 의무교과 재편성 : 한 학년당 법정 수업시수를 축소하여 수업시간을 줄이고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줄여, 지금의 입시 중심 교과목을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편 : 13783표

“청소년, 대선후보에게 교육·청소년 정책을 묻는다!”

<청소년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 희망의 우리학교www.urischool.org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입시로 대표되는 숨 막히는 무한경쟁교육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두 단체는 청소년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짓밟는 무한경쟁교육을 바꿔내고,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받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단체는 미래 사회의 주인이 아닌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자 교육·청소년정책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혁신과 변화의 뜻을 품고 대선에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교육·청소년 정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청소년들의 기대와 물음이 담긴 아래의 공개질의서에 꼭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 결과는 10월4일(목)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열망하는 전국 교육·인권·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에 앞서 진행되는 청소년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mail@urischool.org로 10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전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때에는 청소년들의 공개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신 것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의관련 문의사항은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010-4845-80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09.2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희망의 우리학교

박근혜 [새누리당]

아직 정책 없음
(답변거부)

문재인 [민주통합당]

1. 학생인권에 대하여

1	욕설·체벌·기합, 두발·복장규제, 소지품검사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학생지도방식으로써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2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3	0교시 수업, 방과 후/방학 중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학습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5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지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6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성	○	반대	
7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학교 폭력 해결의 열쇠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제도 밖 학생에 대하여

1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운영비 지원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지원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3. 교육정책에 대하여

1	특목고, 대학서열화, 일제고사와 같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교육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2	무상급식·무상교육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4. 청소년인권에 대하여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현행보다 인하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교육감 선거에 학생·청소년들의 참여 보장에 찬성하십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어려운 상황)	찬성		반대	

5. 우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초중등교육법 개정과 2)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후보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1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아동·청소년이 학교/사회/가정/시설에서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입법청원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의 필요성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6.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교육정책, 청소년정책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 “사람이 먼저인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과도한 경쟁교육의 완화를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 및 창의력 신장
- 공교육 강화 및 입시·평가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절감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1. 학생인권에 대하여

1	욕설·체벌·기합, 두발·복장규제, 소지품검사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학생지도방식으로써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2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3	0교시 수업, 방과 후/방학 중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학습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5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지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6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성	○	반대	
7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학교 폭력 해결의 열쇠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제도 밖 학생에 대하여

1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운영비 지원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3. 교육정책에 대하여

1	특목고, 대학서열화, 일제고사와 같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교육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2	무상급식·무상교육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4. 청소년인권에 대하여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현행보다 인하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교육감 선거에 학생·청소년들의 참여 보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5. 우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초중등교육법 개정과 2)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후보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1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찬성	○	반대	
2	아동·청소년이 학교/사회/가정/시설에서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입법청원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의 필요성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	반대	

6.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교육정책, 청소년정책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 학습, 체벌, 두발복장규제, 언어폭력 등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똑같이 노동하지만 차별당하거나 어리다고 지켜지지 않는 노동인권침해 등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를 없애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교사, 학교, 사회 등 외부에서의 인권침해 뿐 아니라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학교생활이나 청소년 문화 자체가 피해를 입고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이 대표적인 사례일텐데, 대학이 목표가 아닌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 꿈을 찾아나가는 교육을 만들고, 학생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해 교육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등의 권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선거권 인하, 정당활동 보장 등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정치적 의사표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교육정책, 청소년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청소년과는 괴리된 혹은 그들을 괴롭히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만 본 다거나 성인을 위한 준비기, 배워야만 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의 인식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복지의 확대와 청소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책으로 구체화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철수 (무소속)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안철수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김형민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교육·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자와 국정경험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함께 하는 ‘포럼’을 통해 정책을 더 풍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교육, 청소년 관련 정책 역시 ‘포럼’을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11월 초에 각 분야별 정책공약을 묶어 발표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학생(청소년) 관련 정책 공약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귀 단체에서 보낸 각 개별적인 질문, 특히 찬성과 반대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안철수의 생각』과 여러 강연에서 밝힌 학생(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귀 단체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 수준으로 답변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답변은 캠프의 공식적 공약은 아니며, 정책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수준과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1. 질문 1의 ‘학생인권’과 질문 4의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인권은 인간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학생이나 청소년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다만, 학생자치활동의 보장과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이라는 원칙은 있고,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 피선거권 문제입니다.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의 경우, 현행 기준에 대해 합법 판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청소년 참여 보장’ 문제도 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문 2의 제도 밖 학생에 대하여

‘제도 밖 학생’ 역시 제도 안에 있는 학생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는 ‘비인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차원에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원의 문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3. 초등교육법 개정 등의 문제

법 개정과 제정 사항은 국회가 최종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 대통령 후보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귀 단체가 추진중인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전제하고,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또 질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안’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제시했는데, 그 조항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청소년정책인원정책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내용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중고등학생들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지막 질문, ‘교육정책, 청소년 정책의 비전’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치열한 대학입시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님과 학교, 사회의 압력에 짓눌리다 보니 청소년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독서나 여행 등 직간접 체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입시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가 폭력성이나 반항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역시 입시 경쟁 성과에 매달리느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권교육에 소홀한 것 같고요. 초등학교마저 선행학습을 하고, 공교육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교사의 권위가 서지 않죠. 교사들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애정을 갖고 끝어주면 좋겠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교육이 입시 경쟁을 벗어나 총체적인 전인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사와 학교 경영진, 학부모들이 이런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위주 교육, 문제풀이 중심 교육, 결과위주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1등이면 뭐든 용서되는 교육 풍토를 바꿔야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목표가 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회 전체가 함께 변해야 하고요.”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모든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10월3일 정책팀장 김형민

대선후보에게 ‘개념’청소년·교육정책을, 우리사회에는 학생·청소년의‘당연한’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청소년들은 입시로 대표되는 숨 막히는 무한경쟁교육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0교시로 시작해 강제야자로 끝나는 한국 청소년들의 하루는 체벌, 두발규제, 강제보충 등 온갖 인권침해로 얼룩져있으며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 협력과 공생이 아닌 경쟁과 배제만을 강요해온 폭력적인 입시교육은 한국을 4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OECD국가 중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야 말았다.

더 이상 이런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교육정책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눈 먼 정책들 아래서 신음하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정책을,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아수나로에서 진행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 "학생인권 및 학생 참여 보장"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바람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소년들의 소박한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청소년·교육정책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교육·청소년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을 물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선후보는 아직 교육·청소년정책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를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가 과연 청소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그들이 말하는 "변화"에 과연 청소년이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바라는 교육·청소년정책은 명확하다.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현재의 교육·청소년정책을 바꿔내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직 정책이 없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대선정책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변화 없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또한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과의 소통과 그들의 목소리에 대한 진실 된 고려 없이는 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정책 반영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학생.청소년 목소리가 이 사회 전반에 반영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의, 우리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학생.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삶을 보장 받고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2. 10. 0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희망의 우리학교

2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

취지와 구성, 활동계획

■ 출범 취지

○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학교가 폭력과 차별, 통제와 비교육적 관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임. 단속과 처벌 위주의 학생생활규정,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강제학습, 용의복장단속 등으로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교사와 학생이 그 대리전을 치르면서 교육주체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이 확산되어 왔음.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배움으로부터의 탈주 확산,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의 확대재생산 등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학생 역시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고, 학생인권을 교육권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서 확인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 역시 한국교육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리 제한', '체벌의 공식적 허용', '학생의 의견과 참여권 보장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연거푸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 차원의 이행 노력은 현저히 부족했음.

○ 이 같은 가운데 경기, 광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충북과 경남, 전북, 인천, 강원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음. 입법의 공백을 교육자치 조례를 통해 메우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의 상충 논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례 조항의 실효 선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으로 지역별 조례 제정과 정착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조례의 제정 여부에 따라 학생인권의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안착화,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교육청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입법적,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임.

○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 역시 정부의 근시안적·비교육적 정책으로 인해 해결의 기미가 나타나지는커녕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징계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응보주의적 처벌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회복과 복귀'로부터 추방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학생을 겁박하고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양산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책임, 학생들의 인권적 권능 향상이라는 교육적 접근은 첫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과 학교, 복지시설, 지역사회 등 어린이·청소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존중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문화적 변화도 시급함.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일구고자 하는 가치와 원칙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하며, 인권친화적 학교는 인권친

화적 사회를 일구려는 노력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도 함. 때마침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청원으로 국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개입, 실천이 절실함.

○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대선 후보들의 핵심 정책으로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무엇보다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내고 입법·정책의 공백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밑불을 지펴내는 운동단위가 절실히 요청됨.

○ 이에 전국의 교육·인권·사회·청소년 등 각계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함.

■ 운동본부의 구성

○ 소속단체 (10월 3일 현재 가입의사를 밝힌 단체, 지역별 가나다순 표기)

<서울·본부> 52개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대리인/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기> 7개 단체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준)[경기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전교조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74개 단체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건설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민주당시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지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운수버스경인본부, 현대제철지부, GM대우차지부, 가톨릭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회당인천시당,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연대, 인천지역교대위,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통일아침, 다함께인천지회, 인천사노준, 전국노동자회인천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총 42개 단체), 인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모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인천 노동자연대 다함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23개 단체)]

<충북> 46개 단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공공운수노조연맹충북본부, 등대공부방,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생연대충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충북지회,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사노위충북지역위원회, 사람연대충북,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직지생활문화공동체, 진보신당충북도당(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아울의료생협,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한겨레가족모임,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시민광장,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년센터, 통합진보당충북도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조충북지회, 한살림청주생협, 행동하는복지연합, 호죽노동인권센터,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충북본부]

<강원> 18개 단체

강원교육연대 [강릉교육연대, 강릉학부모회, 강원대 학생행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여성연대, 동해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주의와 민생·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원주형성교육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강원본부 학교비정규직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전북> 1개 단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 13개 단체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경남> 88개 단체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거제교육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교육연대, 경남대교수노조, 경남대학생희망센터 미래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회, 경남한살림, 경상대대학원총학생회, 교수노조부울경지부, 굴렁쇠체험단, 김해 YMCA, 김해교육연대,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김해진보연합, 남해교육연대, 노동사회교육원,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진보연합, 마창진여성노동자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생민주창원회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통합당경남도당, 밀양너른마당, 밀양촛불, 사천진보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여성노조경남지부, 열린사회희망연대, 전교조 거창지회, 전교조 고성지회, 전교조 남해지회, 전교조 거제지회,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김해지회, 전교조 마산지회, 전교조 밀양지회, 전교조 사천지회, 전교조 양산지회, 전교조 의령지회, 전교조 진주지회, 전교조 진해지회, 전교조 창녕지회, 전교조 창원지회, 전교조 통영지회, 전교조 하동지회, 전교조 함안지회, 전교조 함양지회, 전교조 합천지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농부경연맹, 진주YMCA, 진주인권회의,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형평운동기념사업회, 진해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참학 거창지회, 참학 김해지회, 참학 진주지회, 참학 거제지회, 창원YMCA, 창원대사회대학생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통일촌, 통합진보당경남도당, 하동진보연합, 한국예술인총연맹경남지부, 함안민중연대, 함양공무원노동조합, 함양농협노조, 함양지역노동자연대, 합천농민회, 합천진보연합]/ICOOP창원생협

<울산> 9개 단체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 조직체계

- ▶ 공동대표 : 각 단체의 모든 대표로 공동대표단 구성
- ▶ 공동집행위원장 : 도경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역 대표성), 배경내(인권교육센터들/ 인권 대표성), 변춘희(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 대표성), 주리(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소수자 대표성), 최훈민(희망의 우리학교/ 청소년 대표성)
- ▶ 팀 구성 : 조직팀/ 법률·정책팀/ 시민캠페인팀

■ 주요 활동계획

-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약속' 운동 전개
 - :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 불식, 대안적 학교폭력 담론 형성,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문화 조성 등을 일구어내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약속 운동을 전개
 - : SNS 등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찾아가는 전국적 서명운동 전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입법·정책과제 제시
 -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대안적 학교폭력 해법 모색,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을 목표로 입법·정책 방향을 연구, 제시
 - : 19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입법 설득 활동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들기 위한 연속포럼 개최
 - :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인권과 교사 교육권의 상생 방안, 학교폭력의 대안적 해법, 학교 안팎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개발 등 주제별 연속포럼을 개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연결짓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정답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될 때 진정한 배움이 싹틔웁니다. 강요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존과 자율을 익힐 수 있는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 다름을 틀림으로 치부하는 것, 그것이 곧 차별의 끝과 시작입니다. 정체성의 차이, 타고난 환경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 경쟁에서의 낙오, 불안사회의 위협으로 학생을 겁주는 교육, 학생을 단속과 적발,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교육 속에 성장한 사람은 자신도 이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까봐, 혼날까봐 겁을 집어먹은 채 성장한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도 겁을 집어먹고, 평생 사회가 조성한 불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유예한 사람에게 행복한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내일입니다.

-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 때리는 행위만이 폭력이 아니라, 모든 차별이 곧 폭력입니다. 또한 모든 폭력은 차별의 고리를 타고 흐릅니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교육, 질서나 '~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을 죽이는 교육, 차별을 외면하는 교육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 맞설 때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도 따리를 틀기 어려워집니다.

-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 책임은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말입니다. 책임은 자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자유가 책임의 전제조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결정일 때 그 결과에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받은 사람이 동료와 사회에 대한 정당한 관심도 가질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틔웁니다.**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당연한 사람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낙인, 불이익,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도 커집니다.

•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이웃을 대하는 법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힘을 갖고 있듯이, 인권을 존중받아본 사람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힘을 갖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방관자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변화의 핵심 의제로 삼은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성숙해 나갑니다. 실수할 권리, 실수를 통해 배울 권리가 보장돼야 성숙할 기회, 책임질 기회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수가 치명적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민주주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배움을 익혀가는 교실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을 민주적으로 대하는 사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입법) 방향

■ 입법의 필요성

○ 뿌리 내리지 못한 학생 인권

통제와 처벌 중심의 학생생활규정,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으로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대리전을 치루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 선호·탈학교로 이어지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대법원 제소 등 잇단 교과부의 공격으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또한 보수진영과 교과부는 끊임없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며, 최근에는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개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임. 이에 학생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 정부대책의 폭력성

2012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은 학생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무시해 온 '폭력의 학교'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음. 그럼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폭력의 숙주인 학교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고 겁박하여 처벌, 치료의 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있음. 또한 개악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서는 학생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엄격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장기 기록하도록 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반교육적, 반인권적인 학교폭력 정부대책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 인권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이 추진되어야 함.

○ 방치되어 있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인권

최근 사회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붕괴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탈학교 청소년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종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인권에 관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의 규범력이 가정과 사회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학교를 넘어 가정, 지역 사회로 확대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인권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운동본부에서는 '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모두 보장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징벌'이 아닌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동반개정을 추진함.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확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역시 함께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입법 방향

1. 인권친화적 학교법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강제학습금지 등 금지되는 인권침해행위 명시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선언적,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 이에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다시금 확인하고,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강제 학습금지 등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금지되는 인권침해행위를 명시함. 또한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함.

-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고 하면서도 이어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을 개별 학교의 학칙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 학교가 학생회 등 학생의 자치기구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주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학생자치활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학생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

- 학생 징계 관련 적법절차 보장

가. 징계사유 제한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제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정하지 않은 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사유 “교육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퇴학사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자) 이를 학칙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의적인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에 학생의 기본권 제한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로써 징계사유를 엄격하게 함(미국 퉁커 판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인 경우와 타인

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고 단순히 소란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학생징계위원회로 일원화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의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학생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가령 학급 친구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 이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음.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선도 사안으로 분류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으로 학생부 기록을 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관된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학생 징계를 학생징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학생징계위원회에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

나. 학생징계시 친권자 외 대리인 참여 보장 및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 학생의 재심청구권 보장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에서 학생징계시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생의 경우 퇴학 등 중징계시에도 부모가 생업 등의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퇴학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학생징계시 실질적인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이 지정한 대리인이 학생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퇴학처분뿐만 아니라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상담교사, 특수교사 확대 등 교육복지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그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환경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2010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21.6명, 중등의 경우 23.9명인데 반하여, 한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30명, 중등의 경우 35.3명임). 그러나 이러한 과밀학급 상황에서 교사가 개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기란 사실상 어려움. 이에 학생의 학습권 실현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20명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교사가 특정 학생에 대하여 개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를 배치하

도록 함.

-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과정편성권 및 평가권 보장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은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격있는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임. 그러나 현재 교사는 국가로부터 이미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선택부터 평가 내용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물론 교사의 자의적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경우 당연히 법적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것은 교원징계 등 부가적 처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교사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이에 자격 있는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관료의 전제적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명시하고, 교사회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사회가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서 채택 등에 있어서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함. 또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막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 자신의 손해 및 학생·학부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현재 학교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교원 자신이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입거나, 학생·학부모에게 재산상·신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원이 개인비용으로 치료, 변상하는 등 교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재산상·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교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선부담하고 사후에 국가가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학부모에게 재산상·신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2. 폭력의 학교 대책법

○ 인권을 보장하는 회복적 사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징계 이전에 학교에 화해조정절차를 도입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전담기구에서는 조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처벌 수위만을 결정하는 징계절차만이 작동할 뿐 피해, 가해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돕는 교육적 절차는 없음.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들간 화해와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처벌은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반발심과 보복의 감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피해학생의 치유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징계 이전 화해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이러한 방식은 현재 각 법원의 소년부에서 화해권고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2010년 처음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한 이후 그 성과가 좋아 전국의 각 법원으로 확대).

-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학생, 교사, 학부모, 갈등조정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하고, 실질적인 솔루션 위원회로 역할 변경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주로 가피해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교사, 학부모로 구성이 되고 그 조치사항 역시 주로 징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에 대한 민원제기도 적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재의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폭력사안에 대한 다양한 원인 파악, 학생의 치유와 복귀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솔루션 위원회'로 역할 변경함. 따라서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가, 갈등조정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가 아닌 화해와 조정, 그리고 실질적인 솔루션 제안과 실행 권한을 가지도록 함. 또한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는 가피해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토론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급전체에 대한 인권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해당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지원할 책무를 부과함.

- 학생의 징계 관련 정보의 보호

현재 교과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한 징계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졸업 후 5년간 보존하여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로 인하여 학생이 스스로 변화할 기회마저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재발방지 및 예방에도 기여하지 못함. 또한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한 징계나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학생징계위원회의 조치사항,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의 조치사항과 같이 학생의 인격과 밀접히 관련된 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집·보존하지 않으며, 학교는 학생의 징계 정보에 관하여 학생이 동의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도록 함(이로써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학생 징계에 대한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교과부훈령은 실효됨)

3. 아동 청소년 인권법

○학교를 넘어 가정,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질적 보장의 근거로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 가정과 학교, 학원 등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대한민국헌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의 체계는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차원의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법률로써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다른 법률(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 근거를 마련함.

-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명시

청소년자살, 아동성폭력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경우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밖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음. 이에 폭력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노동에 관한 권리, 적절한 휴식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놀이·오락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적·정치적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주요한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명문화하고, 체벌 금지를 명시함

- 아동청소년인권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한 기구 설치

현재 행정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인권적 방향으로 종합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기구가 필요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및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요인 분석 및 검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인권평가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및 구제의 기능을 강화함.

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인권의 학교를 넘어 인권 친화적 사회로!

인권 친화적 학교와 그 너머를 향한 활보(活步)를 힘차게 내딛는다.

우리는 오늘, 교육을 살리는 걸음, 사람을 살리는 걸음, 그래서 더욱더 신나는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학생을 겁박하는 교육, 한 가지 정답만이 강요되는 교육, 인간적 모욕이 판치는 교육,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 강제와 불통이 횡행하는 교육, 그래서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모두가 불행한 교육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떠나온 이들이 먼저와 출발선에 섰다. 존중받는 기쁨이 타인을 존중할 동기가 되고, 배우는 기쁨이 가르치는 금지가 되고, 서로의 차이가 환대의 기쁨이 되는 교육을 향한 긴 여정의 첫 도착지는 학생인권조례였다. 그러나 인권친화적 학교를 제대로 움틔우기 위해서는 결코 학생인권조례에서 멈출 수 없음을 알기에, 조례를 흔드는 광폭한 바람이 앞으로도 쉬이 잠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학생과 교사를 모두 지원하는 맞바람이 그 광폭한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금 길을 재촉한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낙인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학교, 학생을 잔인한 가해자 아니면 무기력한 피해자로 양분하는 학교, 학생을 향해 으르렁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성찰의 거울을 들이대지 않는 학교가 너무나 부끄러운 이들도 함께 길을 나섰다. 책임질 기회와 돌아올 기회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그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져야 하는 것임을, '폭력의 학교'가 '학교폭력'을 키운다는 것임을 알기에 서둘러 문밖을 나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히 대접받는 문화, 반(反)폭력·반(反)차별 감수성을 일상에서 익힐 수 있는 문화,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만이 폭력을 녹이는 힘임을 알기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걸음을 재촉한다.

인권친화적 학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사회가 함께 일구어져야 한다고 믿는 이들, 학생인권조례에 깃든 가치와 열망이 학교는 물론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이들도 우리 여행의 동반자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이기에 더욱더 풍요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누구와 살든, 어디에서 배우든, 어떻게 쉬거나 일하든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삶의 공간 가까이에서 참여도 문화도 복지도 권리회복도 가능한 사회를 지도 삼아 길을 나섰다.

우리의 여정이 결코 순조로울 리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던 광풍이, 미성숙한 어린이·청소년에게 인권은 위험하다는 우려를 부채질하는 손길이 또다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권이 꽃피는 학교와 그 너머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 교육을 살리는 걸음,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걸음,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오늘을 살리는 걸음,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걸음, 살리기에 신나는 걸음, 시민과 함께 내딛기에 더욱더 신나는 걸음, 우리의 활보(活步)는 계속된다.

2012년 10월 0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